

감사결과(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관운영 감사)

1. 감사개요

- 감사배경
 - 산업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실시
- 감사기간 : ‘25. 3. 17.~3. 28.(10일간)
- 처분요구일 : ‘25. 4. 24.

2. 감사결과

- 입주기업 관리 부적정
 - 공장임대 업무 부적정 : 표준공장 입주업체 모집 공고 절차 없이, 입주예정 특정 업체에 임시사무실 용도로 약 7개월 동안 임차 (표준공장 403호)해 준 사실 확인
 - 도로점용 허가·가설건축물 신고 규정 미준수 : 도로점용 허가사항임에도 관련규정 미숙지로 입주업체의 LPG저장탱크 무단 설치 허용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 건 중 일부는 첨부서류 확인 없이 처리하여 이후 가설건축물의 규모, 위치 등이 확인이 어려움
 - 입주기업 생산 수출 등 통계관리 미흡 : 입주업체는 표준계약서에 의거 생산·수출 실적 등을 매월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

○ 계약·세입·예산 집행 등 부적정

-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: 규정상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리발주 할 수 없음에도 ‘체육시설물 보수공사’ 및 ‘체육시설물 인조잔디 공사’를 특정 업체에 2건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 체결

또한 ‘23~ ‘24년 공사계약건 모두(30건) 공사감독을 지정하지 않거나 공사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 처리

- CCTV 무단이설에 따른 예산 낭비 : 원장의 사전 결재 없이 CCTV관리업체에 의뢰하여 CCTV 이전 공사 실시 및 원상복구로 결과적으로 관리원 예산(23만원) 낭비
- 임대료 체납업체 세입처리 부적정 : 임대료를 미납한 2개 입주업체에 같은 날(‘24.1.15)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통지하여, 1개 업체에 대해 압류와 임대보증금을 세입 조치하면서 1개 업체는 ‘25.3월까지 미조치
- 출장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여비(식비) 지급 부적정 : 관리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(‘22.1월~ ‘25.2월) 점검 결과, 출장 중 식사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개인 여비(식비)를 지급한 사례 확인

○ 복무 및 기관 운영 관련 규정 미준수

- 유연근무시 복무 관리 부적정 : 유연근무시 출·퇴근 시간을 복무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에도, 등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
- 청원경찰 교육 및 순찰 관리 등 부적정 : 청원경찰은 매월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‘24.1월~’ 25.2월까지 12명이 법정 교육을 미이수

또한 원장은 대체 근무자 없이 휴가 연가를 승인하여 근무초소 1인 근무로 인해 114회 순찰을 미실시한 사실 확인

- 사무실동 비효율적 사용 : 관리원은 사무실동을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업종(편의점, 약국, 문구용품점 등)을 입점시키려는 노력 없이, 공실 및 휴게실 등으로 사용

3. 조치내용

- 표준공장 임대업무, 도로점용 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, 계약 업무 처리, CCTV 무단이설, 유연근무 복무관리, 청원경찰 교육 및 순찰관리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‘징계 1’, ‘경고 1’, ‘주의 4’
- 입주업체의 수출 실적 등 월별 통계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‘주의’
- 공실인 사무실동에 대해 입주기업 지원업체에게 임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‘통보’
- 출장자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 후 출장비 중 감액하지 않은 여비에 대해 환수(260천원) 방안을 마련하도록 ‘통보’